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기후금융의 촉진 등〉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55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5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9
3. 주요내용별 검토	10
가. 제명 및 장 구분	10
나. 제1장 총칙	12
다. 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	15
라. 제3장 부칙	28
마. 보칙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약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Ⅲ.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

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2)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1)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2)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안 제6조)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둠.
- 2)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둠(안 제6조).

마. 공공금융지원(안 제7조).

- 1)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

-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음.

바. 금융회사의 책무(안 제8조)

- 1)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함.
- 2)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3)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사. 채권발행(안 제9조)

-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0.8~1.2℃)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하였음.

○ 아울러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난화는 10년 당 0.2℃의 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파리협정¹⁾의 목표인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고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음.

○ 실제로 세계각지에서는 폭염·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인도 중부의 4월 평균 최고기온이 37.87℃로 121년만에 4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였고, 2022년

1)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비준.

여름 파키스탄 홍수로 1,700여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0년(1991년~2020년) 연평균기온은 과거(1912년~1940년)에 비해 1.6℃ 상승하였고, 여름 길이는 20일 증가, 겨울 길이는 22일 감소하였음. 또한, 최근 폭염 및 호우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체감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로 강수령 기록이 경시되었고,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록적이었던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8월말 기준 평균폭염일수는 평년보다 13.4일 많은 24.0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음.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2021.9.24.)하였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3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지원, 금융상품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2024.3.19.)을 마련하였음. ①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고, ② 한국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160조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③ 중소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20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환경부도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2024.3.19.)을 마련하여 2027년까지 총 30조원의 녹색시장 자금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② 기업,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을 마련하며, ③ 녹색채권, 여신 등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까지 확대하고, ④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총 3개의 장,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은 총칙으로 법안의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은 기본계획,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설치, 공공금융 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채권 발행과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제3장은 보칙으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국회 보고 등으로 구성됨.
-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구 분	내 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	제5조(기본계획)
	제6조(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제7조(공공금융지원)
	제8조(금융회사의 책무 등)
	제9조(채권발행)
	제10조(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제3장 보칙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2조(국회보호)
부 칙	

3. 주요내용별 검토

가. 제명 및 장(章) 구분

- 제정안의 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정안의 주요 규정내용을 대표하여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제명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명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떠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명을 「○○ 특별법」 또는 「○○ 특례법」으로 명명하는데, 특별법과 특례법은 일반법의 체계와 질서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제명을 부여할 때에는 일반법의 규정이나 내용을 확인하여²⁾ 그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임.
 - 제정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이 제정안의 일반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정안을 「탄소중립기본

2)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104쪽

－ 법의 제명이 특별법인 경우 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따로 기본법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안의 제명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수정한 사례도 있음.

법」의 특별법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제정안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정안이 특별법적 성격이 아니라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4조를 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제정안의 제명을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기 위하여 본칙을 총 3개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문의 수나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본칙을 장(章)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³⁾할 수 있는데, 제정안은 12개 조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률 전체의 체계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별도의 필요성도 없으므로⁴⁾, 장(章) 구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106쪽

4) 총칙과 보칙을 제외하면, 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만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본칙 장 구분 >

장(章) 구분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	제5조(기본계획)
	제6조(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제7조(공공금융지원)
	제8조(금융회사의 책무 등)
	제9조(채권발행)
	제10조(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제3장 보칙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2조(국회보호)

나.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안 제1조), “기후위기”, “기후금융” 등 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2조),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기후금융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3. “녹색성장”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을 말한다.
4. “기후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다음의 활동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5.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녹색분류체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립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금융 촉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2조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금융” 및 “녹색분류체계” 등의 정의를 마련하여 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정의 규정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있는 바, 사용 여부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법제실무에 따르면, 정의하려는 용어가 법률 전반에 걸쳐 여러 번 사용되지 않거나 법률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정의하려는 용어가 해당 법률의 1~2개 조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정의할 수 있음.⁵⁾

○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법 목적과 “기후금융” 용어 정의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녹색분류체계”도 “기후금융” 정의와 안 제10조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제적 측면에서 이를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5)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63쪽.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기후금융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관련된 법률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일반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다. 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안 제5조~제10조)

- 제정안 제2장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안 제5조), 기후금융 촉진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정책자금 기관 등의 자금 공급 및 보증 지원(안 제7조),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안 제8조), 녹색채권 발행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안 제10조) 등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금융위원회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⁶⁾와 협의하고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금융 촉진 전략 및 과제 등을 포함하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제 정 안
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 제5조(기본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3.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 4.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⁷⁾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중립·녹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최종 결정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수정함으로써 두 계획간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 정 안

제6조(기후금융 촉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3.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후금융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신설 및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법률에서 하부조직(전담 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⁸⁾는 ‘금융부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심의 등을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내 기후금융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한 상황으로,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3) 공공금융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안 제2조제4호 각목의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의 활동 등(이하 ‘녹색경제활동 등’)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이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심의회 위원으로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의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에 포함된 중앙부처의 차관급은 해당하기 어려우며, 금융발전심의회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제 정 안

제7조(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제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 실적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첫째, 자금 공급 기관으로 규정된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등)도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금 공급 규정과 보증 규정을 통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7조제4항은 자금 공급 및 보증 실적을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⁹⁾, 정책금융기관 등이 기후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

9)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나,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기준 설정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점¹⁰⁾에서, 법률에서 기후금융 지원 실적으로 경영평가 가산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타 입법례를 보면, 주무부처 장관이 점검 결과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¹⁾

10)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금융회사의 책무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금융회사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¹²⁾,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제 정 안
제8조(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 제정안은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2)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금감원)」 제13조에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은 제8조제1항의 기후금융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후금융 취급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국제동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후 논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또한, 안 제2조제5호에서 금융회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바, 업권 및 자산규모에 따른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안 제8조제1항도 의무조항이 아닌 노력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채권발행(안 제9조)

□ 안 제9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녹색경제 활동 등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채권(이하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특례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녹색채권의 발행 및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 정 안

- 제9조(채권발행)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제1항의 채권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 녹색채권(Green Bond)은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채권의 수익금은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 교통수단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2024년 9월 19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녹색채권의 상장잔액은 26조원 규모임.

< 녹색채권 발행현황 >

(단위: 개, 백만원)

발행기관 수	종목 수	상장 잔액
89	288	26,486,671

주: 2024.9.19. 조회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 녹색채권 발행 및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¹³⁾를 근거로 2023년¹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¹⁵⁾ 발행

¹³⁾ 「탄소중립기본법」

지원사업¹⁶⁾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채권 발행에 대해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특례를 신설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제3조제1항¹⁷⁾에서 규정한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외에는 별도로 조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바,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거나, 안 제9조제4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외에도 녹색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4) 2023년 25개 기업에 약 54억원을 지원하여 약 4조 6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함.

1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

16)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 개요]

○ (목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조기 안착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금융·산업 현장의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0.4%(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업기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24.5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예정)

* 2024년도 예산 : 7,680백만원

17)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이하 생략)

사업자도 녹색채권을 상당수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제10조)

- 안 제10조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녹색 전환 목적의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제 정 안
제10조(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가 6개 환경목표¹⁸⁾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¹⁹⁾, 2개 부문(녹색부문, 전환부문²⁰⁾)의 74개 경

18)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녹색분류체계 2개 부문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재생에너지 생산, 무로깅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특정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활용하고 있음.

□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고 친환경기술 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정안과 같이 녹색분류체계 특례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전환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보다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는 지침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체계의 적용을 달리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그 구조상 중소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전환부문 7개 활동²¹⁾에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 녹색분류체계가 이미 중소기업을 일부 고려하여 설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LNG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2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라. 제3장 보칙(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12조),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제 정 안
제3장 보칙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후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칙

-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최초의 기후금융촉진 기본계획은 2028년에 수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2028년에 수립한다.

- 제정안이 기후금융촉진 기본계획을 2028년에 수립하도록 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지난 2023년에 수립되었으므로 2028년에 2차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후금융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²²⁾

-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8년에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시기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연도를 특정하여 기후금융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제정안 부칙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 법 시행 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일정기간 이

22) 계획 수립시기를 맞추는 경우, 두 계획 모두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립주기가 일치되는 효과가 있음.

내에 기후금융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